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백년대계EMP50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①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증권대여위험, 증권차입위험)

⑤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효력발생일** : 2022. 8. 11.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u>2022. 6. 30 기준</u> <u>2022. 6. 27 기준</u>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2. 6. 27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u>2022. 4. 30 기준</u>	<u>2022. 6. 30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집합투자기구 연혁 업데이트	〈신 설〉	<u>2022.05.27</u> <u>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비중 변경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50%이하 → 40%이하</u> <u>모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모투자신탁 연혁 업데이트	〈신 설〉	-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u>2022.06.30</u> <u>자투자신탁 추가 :</u>



트러스톤자산운용

			<u>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u>2022.06.30</u> <u>자투자신탁 추가 :</u> <u>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u>2022.06.03</u> <u>투자신탁 최초 설정</u> <u>2022.06.30</u> <u>자투자신탁 추가 :</u> <u>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u>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2. 4. 30 기준	2022.7.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2. 4. 30 기준	2022. 6. 30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2. 4. 30 기준	2022. 6. 30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자산유동화 증권 : (생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u> (생략) (2)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 자산유동화증권 : (생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u> (생략) (3)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자산유동화 증권 : (생략)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u> (생략) (2)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 자산유동화증권 : (생략)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u> (생략) (3)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4) 자산유동화증권 : (생략)

		4) 자산유동화증권 : (생략) ▶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 (생략)	▶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 A0이상) (생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트러스톤 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동일종목투자 가)(생략) 나)(생략) (1) (생략)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생략)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1) 트러스톤 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동일종목투자 가)(생략) 나)(생략) (1) (생략)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생략)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2)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3) 동일종목투자 가)(생략) 나)(생략) (1) (생략)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생략)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2)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3) 동일종목투자 가)(생략) 나)(생략) (1) (생략)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생략)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신설〉	<u>증권대여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u>

			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증권차입위험</u> :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표준편차 변경 기재 정정	<u>표준편차 : 10.96%</u>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u>50%이하</u>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신 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서 (생략)	<u>표준편차 : 11.29%</u>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u>40%이하</u>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u>투자신탁재산의 25% 이하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 중 배당, 이자 등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ETF에 주로 투자하는</u>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서 (생략)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신 설> [직전 회계연도 : <u>2020.06.28~2021.06.27]</u> <신 설>	<u>2022. 6. 27 기준</u> <u>2022. 6. 30 기준</u>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u>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19,541,130 원입니다.</u> [직전 회계연도 : <u>2021.06.28~2022.06.27]</u> <u>*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u> <u>주 6) 금융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u> [직전 회계연도 : <u>2021.6.28 ~ 2022.6.27]</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2. 6. 27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2. 6. 27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2. 6. 27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u>2022. 4. 30 기준</u>	<u>2022. 6. 30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u>2022. 4. 30 기준</u>	<u>2022. 6. 30 기준</u>
3.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주요업무 (생략)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1) 주요업무 (생략)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인업무